



2010년 귀속 연말정산관련 변경된 제도 안내

해마다 연말이면 근로소득자는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더냈으면 납부세액을 환급받는다. 올해 연말정산시 지난해와 달라진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1. 종합소득세율 변경(법 제5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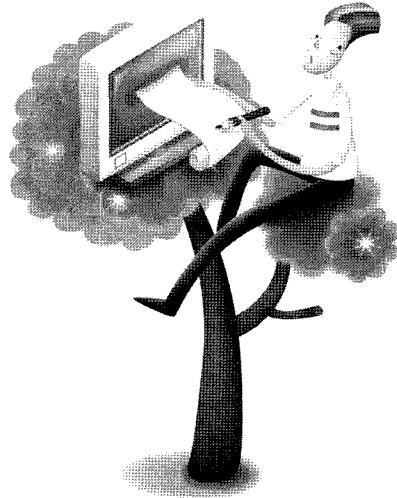
종합소득과세표준	2009년 귀속 세율	2010년 귀속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과세표준의 100분의 6
4,600만원 이하	76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6)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8,800만원 이하	616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5)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1,66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2.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 확대(법 제12조)

- ① 장기미취업자가 올해 3월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을 비과세함.(조특법 제30조)
- ② 6세 이하 자녀의 비과세 보육수당의 연령 판단시기를 보육수당 지급 월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로 변경

3.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및 제도 보완법 제34조, 제52조 ⑧

- ① 근로자는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부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년의 이월공제 및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5년의 이월공제를 허용함.
- ② 국립치과병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을 법정기부금대상으로 추가함.
- ③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20%(중전 15%)
- ④ 기부금명세서 제출대상이 기부금공제 5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서 기부금공제 근로자 전부로 확대함.



4.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요건 완화 및 월세 소득공제 신설(법 제52조 ④)

- ①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삭제
- ②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연300만원 한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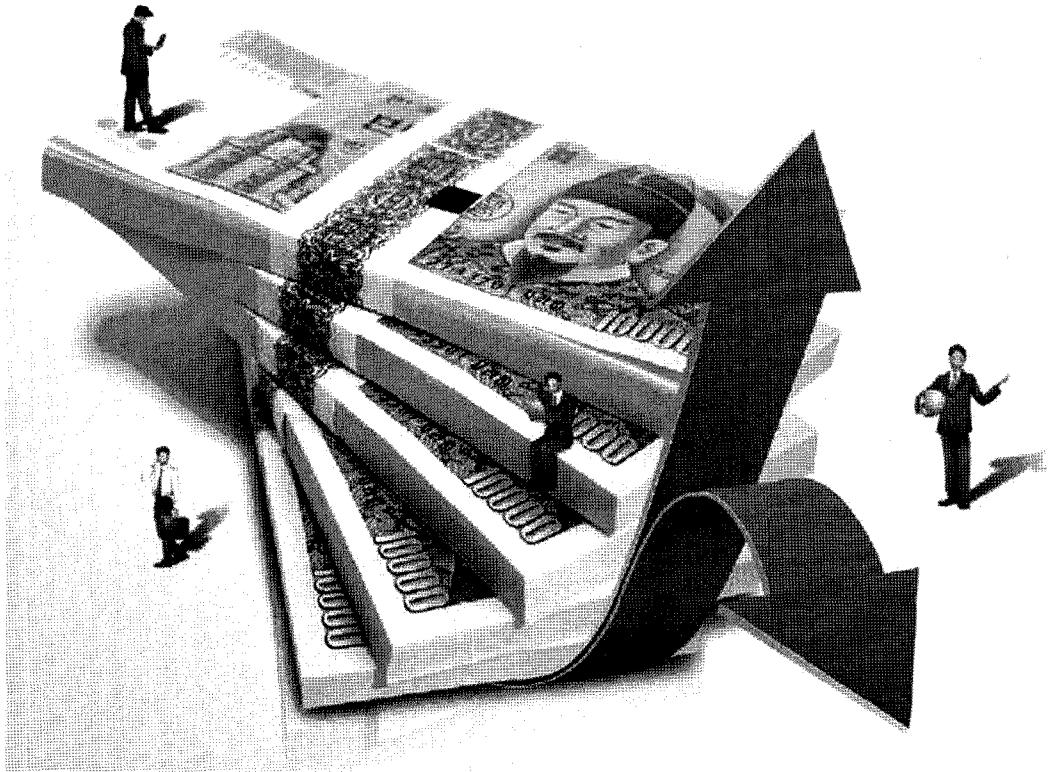
5. 미용·성형수술, 보약의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보약 구입 포함) 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함.

II.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법 제18조)

- 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2년간 50% 감면(중전 5년간 100% 면제)으로 축소하고 감면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여 2011.12.31까지 적용함.
- ② 감면대상을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제한



2.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중 30% 비과세특례 일몰 폐지(법 제18조 2항)

2010년 귀속부터는 비과세특례는 폐지되고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적용함.

3.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법 제73조)

- ① 기부금 과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특례의 대상에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함.
- ②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됨.
- ③ 공인신탁기부금은 종전과 같이 3년, 그 외 특례기부금은 2년간 아월공제 허용함.

4.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등(법 제87조)

- ①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 일몰시한을 2012년말까지 3년간 연장함.
- ② 저가주택(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하되,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 다만, 2009.12.31까지 가입자 중 연간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함.

5.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법 제87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합(2009년 5월 6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연장 및 공제한도 축소법 제126조 2항

-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함.
-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종전 20%) 초과시 공제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시 20%,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시 25%로 차등 변경함.

〈 2010년 귀속 연말정산관련 변경 내용 정리 〉

구분		2009년	2010년
기본세율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6% 88백만원 이하 : 25% 88백만원 초과 : 35%	12백만원 이하 : 6%(변동없음) 46백만원 이하 : 15%(1%p ↓) 88백만원 이하 : 24%(1%p ↓) 88백만원 초과 : 35%(변동없음)
월소득공제		〈 신설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4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국민 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자금만 공제대상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자금도 공제대상(총급여 3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에 한함)
기부금 이월공제		공익신탁기부금만 이월공제 가능(3년)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 1년 • 특례기부금 2년 • 지정기부금 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문턱	총급여 20% 초과금액	총급여 25% 초과금액
	공제한도	Min[500만원, 총급여 20%]	Min[300만원, 총급여 20%]
공제비율		20%동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직불카드, 체크카드 25%
장기주택 마련저축		불입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총급여 8,800만원 이하근로자가 2009년 말까지 가입하고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금년 가입자는 공제불가)
의료비	미용성형		
	수술비 및 보약구입비	의료비공제 가능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